

행 정 자 치 부

주의 · 통보 요구

제 목 상주감리대상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및 기술자 미 배치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, 창원시

내 용

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,

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은 아래 [표 1]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.

[표 1] 소방기술자 배치기준

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	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
1.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(기계분야 및 전기분야)	가.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.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
2.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(기계분야 및 전기분야)	가.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는 제외한다)의 공사 현장 나.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

또한,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.

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르면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, 방법 및 대상 기준은 아래 [표 2]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.

또한, 「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」 제14조의2에 따르면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의 업무대행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자로 감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[표 2]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, 방법 및 대상기준

종류	대상	방법
상주 공사 감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는 제외한다)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. 다만,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. 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.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「민방위기본법」 또는 「향토예비군 설치법」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.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·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
그러나, 11월 23일~25일 상주소방감리대상 현장점검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소방공사시설공사가 진행중임에도 2개소의 상주감리 및 3개소의 소방기술자가 현장에 본사회의 및 현장견학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아 소방시설의 부실공사 등이 우려된다.

[표 3] 상주 감리 및 기술자 미 배치 현황

연번	소방서명	성명	소방시설공사명	업체명	적발일	미 출근사유	비고
1	○○	○○○	○○○○○○○ ○○	(주)○○○○	2016.11.23.	현장견학	감리
2	○○	○○○	○○ 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	(주)○○○○○ ○○○	2016.11.25.	본사출장	감리
3	○○	○○○	○○ 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	○○○○(주)	2016.11.25.	본사출장	기술자 (기계)
4	○○	○○○	○○ 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	(주)○○○○○ ○○	2016.11.25.	본사출장	기술자 (전기)
5	○○	○○○	○○○○○○○ ○○○	(주)○○○○○ ○○	2016.11.25.	본사출장	기술자 (전기)

① ○○○의 경우, 출근기록부에는 11월 10일까지 출근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, 11월 14일 검측요청서(○○○동 1층 슬라브 배관공사)에 검측한 것으로 표기, 또한 22일 현장점검일에도 관통슬리브 및 인서트 작업 시행되었음에도 상주감리 서울 현장 견학 등의 사유로 미 출근

② ○○○의 경우, 현장점검일(25일)에 배관 고정용 너트 작업(기계분야) 및 경보 설비(전기분야) 작업진행중임에도 본사 회의 참석차 미 출근

③ ○○○의 경우, 소방기계분야(S/P)배관을 고정하기 위한 고정용 너트 작업이 진행중임에도 본사 회의 참석차 미 출근

④ ○○○의 경우, 소방전기분야 자탐 전선관 작업이 진행중임에도 본사 회의 참석차 미 출근

⑤ ○○○의 경우, 현장 내 S/P, 옥내 소화전 배관 작업이 진행중임에도 본사 전체회의 및 기성 업무차 미 출근

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, 창원시장은

[주의]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방시설공사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[통보] 소방공사가 진행중임에도 소방감리를 미 배치한 (주)○○○○ 및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에 대하여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

경남도지사는

[통보] 소방기술자를 미 배치한 ○○○○(주) 및 (주)○○○○○○○○에 대하여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